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 임유택 소유물건(2024타경88552)

의뢰인 :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영민

감정서번호 : 해강121-202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강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정 영 필

감정평가액	이억팔천구백만원정(₩289,000,000.-)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영민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의정부지방법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임운택 (2024타경88552)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11.04	2024.10.31 ~2024.11.04	2024.11.04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289,000,000
	합계					₩289,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의정부지방법원의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건임.

2.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55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62번길 12]			
건물명	녹양힐스테이트 제101동			
주용도	아파트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금속기와잇기지붕			
규모	25층			
용도지역 및 기타 공법상 제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사용승인일	2006-08-25			
기호	층, 호	전유면적 (㎡)	대지권면적 (㎡)	비 고
1(가)	19층 1901호	59.98	25.86	

※ 대상물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2)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4. 기준시점,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1) 기준시점

본 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4년 11월 4일로 하였음.

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2024년 10월 31일 실지조사를 통해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5.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등

1) 감정평가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 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법령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방식(「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원가방식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3) 감정평가방식의 결정

가. 주된 평가방법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나. 다른 평가방법

본건은 구분건물의 특성상 거래사례비교법 외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시산가액의 조정 및 평가가격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검토는 생략하되, 동 유형 구분건물의 가격수준, 평가사례, 거래사례, 기타 가격 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일괄·구분·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음.

6. 기타 참고사항

본건의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참조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1. 산출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선정한 후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비준가액)을 산출하였음.

2. 비교 거래사례 선정

1)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 호	전유면적 (㎡)	거래금액(원)	거래시점
					거래단가(원/㎡)	
㉠	의정부시 녹양동 355	녹양 힐스테이트 106동	8층 8**호	59.98	280,000,000	2024-07-11
					4,668,223	

2) 비교 거래사례 선정

기준시점 현재 등기된 거래사례 중 본건과 유사성이 높고 적절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기의 <거래사례 ㉠>을 본건 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로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사정보정

유사 부동산의 정상적인 시가수준 등을 고려할 때 선정된 <거래사례 ㉠>은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의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로서 별도의 사정보정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00)

4. 시점수정

본건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자료 중 “경기 경원권 의정부시”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여 시점수정을 하였음.

지역	거래 사례 기호	산정기간	월별 매매가격지수		산출내역	시점수정치
			2024년 6월	2024년 9월		
경기 경원권 의정부시	㉠	2024-07-11 ~ 2024-11-04	2024년 6월	84.9	85.1 / 84.9	1.00236
			2024년 9월	85.1		

* 거래시점 : 2024-07-11 : 2024년 6월 지수를 적용 함.

* 기준시점 : 2024-11-04 : 2024년 9월 지수를 적용 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가치형성요인 비교

1) 가치형성요인 개관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하며, 아파트의 경우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등으로 구분함.

2)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가치형성요인	세 부 항 목
단지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가치형성요인 비교

구 분	단지 외부요인	단지 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비교치
기호 1(가)	1.00	1.00	1.03	1.00	1.030
----- 거래사례 ㉠	본건은 거래사례와 동일한 아파트단지내에 소재하여 외부요인, 내부요인, 기타요인은 유사하고 본건이 향별효용에서 열세이나 층별효용에서는 우세하며 전반적인 호별요인은 우세함.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기호	거래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면적 (㎡)	산정가격 (원)	비준가액 (원)
1(가)	㉠	4,668,222	1.00	1.00236	1.03	59.98	289,080,578	289,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유사 구분건물 평가사례 등

1. 유사 부동산의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KAPA HUB)]

구분	소재지	건물명	층 호	전유 면적 (㎡)	평가금액(원)	기준시점	목적
㉠	의정부시 녹양동 355	녹양 힐스테이트 103동	6층 6**호	59.98	326,000,000	2023-07-17	법원 경매
㉡	의정부시 녹양동 355	녹양 힐스테이트 110동	4층 4**호	84.96	354,000,000	2024-10-07	법원 경매

2. 유사 부동산의 시가수준

본건과 동일한 녹양힐스테이트내 유사 물건의 시가수준(전유면적당 단가)은 다음과 같음.

- 전유면적 59.98㎡ : 4,600,000~5,000,000원/㎡ 내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의견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 분	시 산 가 액 (원)	비 고
<거래사례 ㉠>기준 시산가액	289,000,000원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과 인근 유사부동산의 시가수준, 감정평가사례, 거래사례 등을 종합 참작하고,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3. 감정평가액 결정

기 호	감정평가액(원)	비 고
1(가)	289,000,000원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서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55 녹양 힐스테 이트 105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금속기와잇기지붕 25층			289,000,000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62번길 12	
					1층	71.32			
					2층	45.74			
					3~5층 각	377.37			
					6~25층 각	374.57			
	동 소	355	대			41,800.8			
			(내)			59.98	59.98		
			철근콘크리트구조						
			19층 1901호			25.86	25.86		
			1.소유권.대지권			-----			
					41,800.8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115,600,000 173,400,000		
합 계							₩289,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소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금속기와잇기지붕 25층건 내 제19층 1901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바 닥 - 장판깔기 및 타일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2, 오픈형 방1, 욕실2, 거실, 주방겸 식당,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아파트로서의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인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단지 북측의 진입로를 통해 출입하고 있으며 도로상태는 무난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가능)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정부광동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의정부광동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55 녹양힐스테이트 105동 19층 1901호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55 녹양힐스테이트 105동 19층 1901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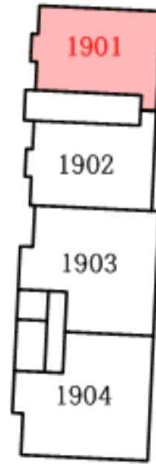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55 녹양힐스테이트 105동 19층 1901호

None Scale



본건 :
녹양힐스테이트
제105동 19층 1901호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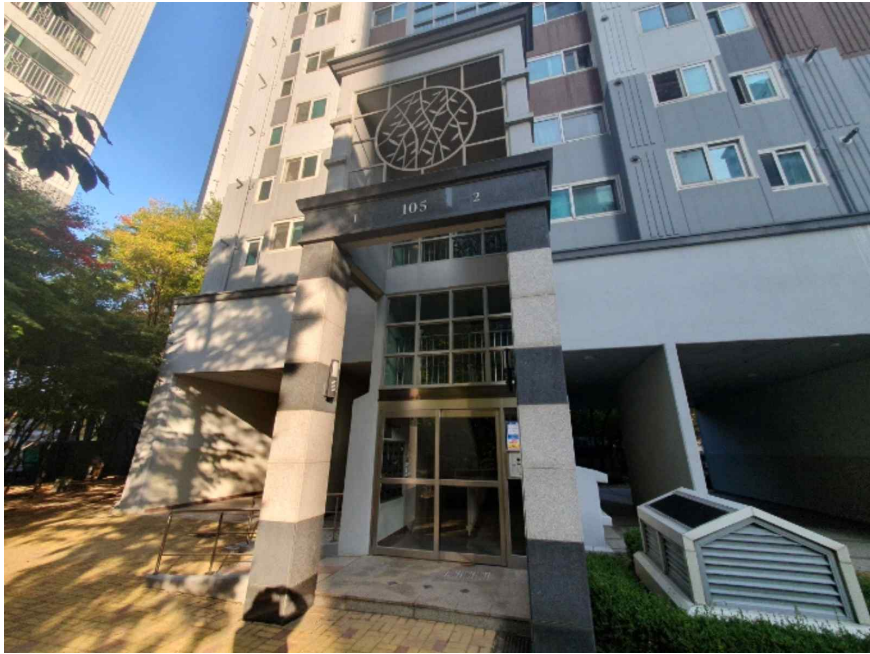


본건전경 - 녹양힐스테이트 제105동



본건전경 - 녹양힐스테이트 제105동

사 진 용 지



녹양힐스테이트 제105동 1-2호라인 1층 공동출입구



본건 - 녹양힐스테이트 제105동 1901호 출입문